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

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4. 7. 1.] [행정안전부고시 제2024-50호, 2024. 6. 25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회계제도과), 044-205-3783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례 적용기간) 영 제26조제2항, 제37조제1항, 제51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제2024-50호,2024.6.25.>

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